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9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용태 · 우재준 · 안철수
김예지 · 서천호 · 이성권
서명옥 · 배준영 · 송석준
강명구 · 김성원 · 조은희
조정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요구되는 스포츠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상에서의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영장과 같은 시설이 부족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

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

제7조제1항 중 “체육관”을 “체육관, 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의 장이 스포츠 안전교육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스포츠안전교육 활성화</u>
<u>7. ~ 10.</u> (생 략)	<u>8. ~ 11.</u>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u>체육관</u>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 <u>체육관, 수영장</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의 장이 스포츠안전교육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 ⑤</u> (생 략)	<u>④ ~ ⑥</u>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